

# 캘리포니아

## 예비 선거

2004년 3월 2일 화요일

### 정확성 증명

캘리포니아 주총무처 장관인 본인 Kevin Shelley는, 본 문서에 수록된 법안들이 2004년 3월 2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실시될 예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들에게 회부될 것이며, 본 안내서가 법률에 의거 정확하게 제작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04년 1월 6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서명과 함께 주 관인을 날인하여 이를 증명합니다.



Kevin Shelley  
주총무처 장관



유권자 공식 안내서

추가본

## 주총무처 장관

유권자 여러분,

2004년 3월 2일 선거에 대한 “정규” 유권자 안내서를 이미 수령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규 안내서는 녹색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투표에 회부되어 정규 안내서에 수록되지 못한 법안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2004년 3월 2일 선거 유권자 안내서 추가본(청색 표지)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자 안내서 추가본에는 법안 57(경제 회복 채권법) 및 법안 58(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유권자 여러분이 본 책자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권고합니다. 또한, 3월 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주총무처 장관의 웹사이트, [www.MyVoteCounts.org](http://www.MyVoteCounts.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3월 2일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yVote  
COUNTS  
[www.MyVoteCounts.org](http://www.MyVoteCounts.org)



# 목차

		페이지
	<b>투표 법안 개요</b>	<b>3</b>
<b>채권법</b>		
<b>법안 57</b>	경제 회복 채권법.	<b>4</b>
<b>입법부 헌법 개정</b>		
<b>법안 58</b>	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	<b>10</b>
	<b>주정부의 채권채무 개요</b>	<b>16</b>
<b>유권자 정보 페이지</b>		
	유권자 권리장전	<b>2</b>
	<b>법률안 전문</b>	<b>18</b>

## 유권자 권리장전

1. 등록된 유권자에게는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등록된 유권자는 18세 이상의 캘리포니아주 거주자로서,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보호감찰의 가석방 상태가 아니며 현재 거주지 주소에 유권자로 등록된 미국 시민을 의미합니다.
2. 유권자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유권자는 임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유권자는 투표 종료 전에 투표소의 투표 줄에서 서 있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유권자는 외부의 압력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유권자는 투표함에 용지를 넣기 전에 실수한 경우, 새 투표 용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언제든지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잘못된 투표 용지를 새 용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자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종료 시간 전에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잘못된 투표 용지를 반송하는 경우 새로운 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6. 유권자는 필요한 경우, 투표함에 용지를 넣을 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유권자는 완성된 부재자 투표용지를 카운티 내의 특정 선거구에 반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8. 선거구 내의 거주자 수가 일정 투표율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유권자는 다른 언어로 작성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유권자는 선거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선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 절차에 관련하여 선거구 위원회와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질문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거나 답변을 줄 수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계속되는 질문으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위원회나 선거 관리 공무원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불법 행위 또는 부정 행위에 대해 지방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주총무처 장관 사무실에 고발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리 행사를 거부당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선거 부정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 주총무처 장관의 보안 수신자 부담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유권자 보호 수신자부담 전화**

1-800-345-VOTE (8683)

주총무처 장관 | 캘리포니아 주

**법안 57** 경제 회복 채권법.

채권법  
의회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개요**

적자 보전을 위한 최대 일백오십억 달러(\$15,000,000,000)의 일회성 채권. 재정적 영향: 향후 몇 년에 걸친 주 예산 부족분 및 연간 채무상환 적립금의 축소를 위한, 사전에 승인된 채권 대비 최대 4십억 달러의 일시적인 증대. 해당 채권의 기간 연장 및 규모 증대로 인해 차후 몇 년 동안의 높은 연간 채무상환액이 본 법안의 영향을 상쇄시킬 것임.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p><b>찬성</b></p> <p>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주정부는 기존의 예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15십억 달러의 채권을 판매합니다.</p>	<p><b>반대</b></p> <p>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주정부는 15십억 달러의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 대신,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판매하여 적은 규모로 기존 예산 채무를 상환합니다.</p>
---	---

**찬반론**

<p><b>찬성</b></p> <p>지난 3년 동안 주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본 법안을 통해 적자 상황이 정리되고 세금 증대 없이도 캘리포니아의 재정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법안 57은 주정부가 자금 부족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동시에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예산 감축 시행을 금지합니다.</p>	<p><b>반대</b></p> <p>법안 57은 우리 주의 적자 상황을 종결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적자 재정 상태를 지속시켜 적자 규모가 증대될 것입니다. 본 법안은 가구 당 2,000달러를 부담시키는 15십억 달러-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는 별도-의 부채에 우리를 몰아 넣습니다. 주지사의 소환으로 Sacramento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추가 세금 징수 반대. 법안 57에 대한 반대표는 다음을 촉구할 것입니다: 융자 및 과다 지출의 중단.</p>
---	---

**추가 정보**

<p><b>지지</b></p> <p>Tom Hiltachk Join Arnold 455 Capitol Mall, Suite 801 Sacramento, CA 95814 916-442-7757 info@joinarnold.com www.joinarnold.com</p>	<p><b>거부</b></p> <p>상원의원 Tom McClintock 1029 K Street, Suite 44 Sacramento, CA 95814 916-448-9321 http://tommcclintock.com</p>
---	--

**법안 58** 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

입법부 헌법 개정  
의회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개요**

균형예산의 집행 요구, 재정적 긴급상황 해결 및 예산 예비비 설정. 재정적 영향: 주에 미치는 순수한 재정적 영향은 알려진바 없으나 부분적으로 향후 의회의 활동에 따라 매년 다양하게 나타날 것임. 예비비 규정으로 경제 호황기에 주 지출을 삭감하고 불황기에는 증대시킴으로써 주 지출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음. 균형 예산을 요구하고 적자 융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예산 부족분 문제를 바로잡는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p><b>찬성</b></p> <p>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주 헌법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정됩니다: (1) 주의 균형 예산 집행, (2) 주 예산 예비비 요건, 및 (3) 주 예산 결손금 처리를 위한 자금 지원용 향후 융자의 제한.</p>	<p><b>반대</b></p> <p>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주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하지 않습니다.</p>
---	--

**찬반론**

<p><b>찬성</b></p> <p>법안 58은 주지사 및 의회의 균형 예산 집행을 요구합니다. 본 법안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 이행 및 8십억 달러 상당의 예비비 조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로써, 결손금을 충당하기 위한 차후의 융자를 방지합니다.</p>	<p><b>반대</b></p> <p>15십억 달러 상당의 채권 발행에는 강력한 지출 제한 법안 마련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58은 지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산 균형을 위한 단기 융자를 허용하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부분의 예산 예비비가 보호되지 않으며 막대한 지출 증가 및 세금 인상의 가능성이 증대됩니다.</p>
---	--

**추가 정보**

<p><b>지지</b></p> <p>Tom Hiltachk Join Arnold 455 Capitol Mall, Suite 801 Sacramento, CA 95814 916-442-7757 info@joinarnold.com www.joinarnold.com</p>	<p><b>거부</b></p> <p>Richard Rider San Diego 세금을위한투쟁 자모임 10969 Red Cedar Drive San Diego, CA 92131 858-530-3027 rrider@san.rr.com</p>
---	--

**공식 명칭 및 개요**

법무부장관 작성

**경제 회복 채권법.**

- 2004년 6월 30일 주정부의 일반기금 누적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최대 일백오십억 달러(\$15,000,000,000)의 일회성 경제 회복 채권.
- 경제 회복 채권은 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이 유권자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만 발행됩니다.
- 채권은 기존 세수 및 특별 기금에 적립 가능한 기타 수익에 의한 지불을 보증합니다.

**입법 분석관의 주 및 지방 정부의 재정적 영향 평가 개요:**

- 사전에 승인된 채권 대비, 최대 4십억 달러의 일시적인 증액으로 주정부의 예산 부족분을 축소시킬 수 있음.
- 차후 몇 년 동안 연간 채무상환 적립금 축소.
- 해당 채권의 규모 증대 및 기간 연장으로 인해 차후 몇 년 동안의 높은 연간 채무상환액이 본 법안의 영향을 상쇄시킬 것임.

**ABX5 9(법안 57)에 대한 입법부의 최종 표결**

하원: 찬성 65 반대 13

상원: 찬성 27 반대 12

## 입법 분석관의 분석

### 배경

**캘리포니아의 최근 예산 문제.** 캘리포니아의 일반 기금 예산은 공립학교, 고등 교육,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그리고 교도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경제와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주정부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2001-02년도 이후, 일반기금은 수입과 지출 사이에 만성적인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정책 입안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축소하고 수입을 증대시켰으며 다양한 기타 법안들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은 특수기금, 지방 정부, 및 민간 신용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용자를 받았습니다.

**적자재정 채권.** 예상되는 금년도(2003-04)의 예산 부족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조치의 일환으로 10.7십억 달러 상당의 적자재정 채권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채권의 목적은 “과거의 청산” 및 2002-03년 말까지 지속될 예산 누적 적자의 해소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과거, 적자를 일시에 청산하는데 필요했던 강도 높은 예산 조치를 피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승인된 채권은 복합적인 자금 지원 절차를 토대로 상환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음영 처리된 상자 참조). 이에 따라, 일반기금의 연간 비용은 2004-05년도 캘리포니아 판매세의 2분의 1센트 즉, 약 2.4십억 달러에 해당하며 이후 채권이 상환될 때까지(약 5년 후)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 적자 채권의 상환

**기존의 10.7십억 달러 채권.** 사전 승인된 적자재정 채권은 해당 채권의 상환에만 사용되는 수익 흐름을 “융통성” 있게 만드는 복합적인 절차를 통해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었습니다:

- 지방 정부 판매세의 2분의 1센트 상당분을 채권 상환용 특수 기금으로 이전.
- 교육구의 재산세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여 판매세 손실분 상쇄.
- 교육구에 대한 일반 기금 지불금을 추가하여 교육구의 이전된 재산세를 대체.

위와 같은 이전 결과로 지방 정부나 교육구에 미치는 순 영향은 없습니다. 총 채권 상환 비용은 주정부의 일반기금에서 부담됩니다.

**15십억 달러의 법안 57 채권.** 본 법안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채권 상환 방식은 이전되는 수입액이 주 판매세의 2분의 1센트가 아닌 4분의 1센트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합니다. 총 채권 상환 비용은 계속해서 주정부 일반기금에서 부담됩니다.

본 적자 채권은 현재 법정에 계류 중으로서 아직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02-03 이월 결손금은 2004년 6월 상환 만기인 단기 용자를 통해 자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입법 분석관의 분석(계속)

**2004-05년도의 예상 부족분.** 2004-05년도에 주정부가 직면할 또 다른 대규모 예산 부족분은 약 15십억 달러 선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본 예상 금액은 현재 승인된 10.7십억의 적자재정 채권이 판매되고 이에 따라 2002-03년도 이월 결손금이 장부에서 삭제된다는 가정 하에 나온 수치입니다. 본 판매에서 채권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산 부족분의 규모는 확대될 것입니다.

법안

본 법안은 최대 15십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여 주정부의 적자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본 법안에 의해 승인된 채권은 전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한 적자재정 채권 대신 사용됩니다.

**제안된 채권의 상환.** 본 채권 상환으로 인한 연간 일반기금 비용은 현재 승인된 채권에 대해 판매세 수익의 2분의 1센트에 상당한 것에 비해 4분의 1센트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주정부의 예산 안정화 계정(본 투표에 회부된 법안 58이 승인되는 경우, 본 법안에 의거 조성됨)에 이전되는 특정 기금은 채권 상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본 법안에는 해당 채권 전용 판매세 수익이 채권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해에는, 일반기금으로 그 차액을 충당하는 예비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본 법안은 투표에 회부된 법안 58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발효됩니다.

재정적 영향

현재 승인된 적자재정 채권 대비 제안된 채권의 재정적 영향이 표 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채권의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승인된 채권과 비교 시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나타내나 장기적으로는 연간 비용이 추가됩니다. 상세 설명:

**단기 절감액.** 제안된 채권의 수익금은 현재 승인된 채권보다 최대 4십억 달러까지 증대됩니다. 본 수익금은 주정부에 일회성 추가기금으로 최대 4십억 달러를 제공하여 재정 부족분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주정부는 채권의 채무 상환과 관련하여 단기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판매세의 2분의 1센트가 아닌 4분의 1센트를 기준으로 채권이 상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 연간 일반기금 비용은 현재 승인된 채권의 2분의 1 수준이 될 것입니다.

**장기 비용.** 단기 절감액은 연장된 기간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상쇄됩니다. 이는 제안된 채권 규모가 확대되고(10.7십억 달러 대비 15십억 달러) 상환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표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승인된 채권 상환에는 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제안된 채권은 9년에서 14년에 걸쳐 상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안 57



입법 분석관의 분석(계속)

표 1		
사전 승인된 채권과 법안 57에서 승인되는 채권의 비교		
	법안 57 채권	사전 승인된 적자재정 채권
채권 금액	15십억 달러 <sup>a</sup>	10.7십억 달러
연간 일반기금 비용:		
• 판매세 전용 관련 연간 비용.	1.2십억 달러 <sup>b</sup>	2.4십억 달러 <sup>b</sup>
• 법안 58의 예비비에서 가능한 연간 지불액. <sup>c</sup>	2006-07년도의 425백만 달러	-
	2007-08년도의 900백만 달러	-
	2008-09년도의 1.45십억 달러 <sup>d</sup>	-
채권 상환 기간:		
• 판매세 수익만 사용 시.	14	5
• 법안 58 예비비에서 최대 5십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가정 시.	9	-
<p><sup>a</sup> 일반기금의 순익금은 예비비 요건 및 기타 요인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sup>b</sup> 비용은 2004-05년도 비용입니다. 금액은 이후 매년 완만하게 증가할 것입니다.</p> <p><sup>c</sup> LAO 전망 연도 수익 예상액 기준, 예비비로의 전환을 중지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p> <p><sup>d</sup> 본 금액은 예비비 누적 총액이 5십억 달러에 이를 때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입니다.</p>		

19 조항  
법안 57

### 법안 57에 대한 찬성론

캘리포니아에 대한 주정부의 지출은 통제 밖에 있습니다. 지난 삼년 간, 주정부의 지출액은 주 수익을 상당 금액 초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 채권법은 적자 상황을 정리하고 세금 증대 없이 캘리포니아의 재정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 채권법은 주정부가 자금 부족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예산 감축 시행을 금지합니다.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 채권법은 유권자가 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효력을 발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은 적자 해소를 위한 추가 용자를 금지하며 균형 예산의 집행을 요구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은 채권 조기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십억 달러의 기금을 규정합니다. 또한 향후 적자 방지에 사용 가능한 8십억 달러 이상의 예비비를 규정합니다.

전년도에 주정부는 누적된 예산 적자 보전을 위해 12.9십억 달러의 채권을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한 건의 채권 발행이 위헌이며, 기타 채권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음을 공표했습니다. 그 이후, 주정부의 예산 적자는 더 큰 규모로 누적되었습니다. 법안 57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채무를 재편성하고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본 채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6월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자금난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한 단일책은 과감한 세금 인상 뿐입니다.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 채권은 승계된 채무에 자금을 지원하고 계속되는 구조적 적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정부에게 벌어줍니다.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 채권과 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인 법안 58 모두, 주의 재정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을 캘리포니아의 지도자에게 제공합니다.

Jack O'Connell 공교육 교육감, 캘리포니아 납세자협회, Steve Westly 주 감사관,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및 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과 동참하여 법안 57을 지지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재정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  
캘리포니아주

LARRY McCARTHY, 회장  
캘리포니아 납세자협회

ALLAN ZAREMBERG, 회장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 법안 57 찬성론에 대한 반론

찬성론자들은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출이 통제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지출 삭감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대처법은 공전의 규모인 15십억 달러-이자 별도-를 용자 받아 지출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가구 당 부담금을 2,000달러 이상에 이르게 합니다.

주정부 지출이 현재보다 13.4% 감소한다면 적자는 18개월 내에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이 지출 수준은 여전히 Gray Davis가 주지사로 당선되었을 때의 지출 수준보다 15% 초과한 액수입니다.

찬성론자들은 이 법안이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15십억 달러 규모의 용자금과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이자의 상환금을 어

디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후에, 해당 자금은 찬성론자가 원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예산 감축이나 세금 인상을 통해 지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57 및 법안 58은, 오년 전 당시 57.8십억 달러였던 주 예산을 계획되어 있는 90.2십억 달러로 부풀려 내년에 소비하게 되는 통제 불능의 주정부 지출을 감소시키기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본 법안은 정치인들이 Sacramento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지출, 용자 세금 부과를 계속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상원의원 TOM McCLINTOCK

상원의원 BILL MORROW

### 법안 57에 대한 반대론

캘리포니아는 수십억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통제 불능의 융자금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신용 등급은 미국 내 최하위로 하락하여 여러 제삼세계 국가와 동일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법안 57은 15십억 달러-수억 달러 상당의 이자 별도-의 부채에 우리를 허덕이게 만듭니다. 법안 57의 총 채무 상환액으로 인해 일반 가정은 2,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 법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당 법안은 단 한 개의 학교도, 도로도, 공원도 건설하지 않습니다. 거리에 경찰관을 배치하거나,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Sacramento의 정치인이 처음 발생시킨 막대한 적자를 덮어줄 뿐입니다.

정부 관료주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삭감하고 부정행위를 근절시키는 대신에, 그들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채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49년 이후, 캘리포니아의 헌법은 이러한 종류의 채권이 적자 지출을 덮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장기 채권은 차세대를 위한 학교, 공원, 고속도로, 상수도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

한 공전의 융자 정책을 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똑같은 정치인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헌법 수정안의 폐지를 획책하고 있으며, 감히 이를 “균형 예산 수정안”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오년 전, 캘리포니아는 일반기금에서 57.8십억 달러를 지출했고, 내년에는 90.2십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채권 유효 기간 동안 매년 주 예산에 십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채무 상환액을 부가하는 대신, 우리는 주 정부의 지출 명령을 중단시키고, 1939년부터 1983년까지 주지사에게 부여되었던 중반기 지출 감축 권한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10월 7일의 선거는 Sacramento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세금 추가 징수 반대.

법안 57에 대한 반대 투표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융자 중단, 과다 지출 중단, 재정의 정상화!!!

상원의원 TOM McCLINTOCK

상원의원 BILL MORROW

법안 57

### 법안 57 반대론에 대한 반론

캘리포니아 의회는 누적된 예산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이미 12.9십억 달러의 채권을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 채권법은 유권자에게 캘리포니아의 건전한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는 세금 인상 없이도 캘리포니아 재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 채권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주정부는 자금 부족난을 겪게 되어 교육, 의료 서비스와 같은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급격히 삭감하거나 부득이한 대규모 세금 인상을 단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릅니다. 법안 57은 승계된 채무에 자금을 지원하여 계속되는 구조적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정부에게 벌어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 채권법은 유권자가 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을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반대론자들에게 오도되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은 손실금

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 융자를 방지하고 균형 예산의 집행을 요구합니다.

Schwarzenegger 주지사는 법안 57 및 법안 58의 통과를 필요로 합니다. 본 법안은 융자 중단, 과다 지출 중단,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주지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Jack O'Connell 공교육 교육감, 캘리포니아 납세자협회, Steve Westly 주 감사관 및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동참하여 법안 57에 “찬성” 표를 던지십시오. 캘리포니아 재정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  
캘리포니아주

LARRY McCARTHY, 회장  
캘리포니아 납세자협회

CARL GUARDINO, 회장  
Silicon Valley 제조그룹

**공식 명칭 및 개요**

법무부장관 작성

**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

- 일반기금 지출액이 일반기금 세입 추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균형예산의 집행이 요구됩니다.
- 주지사는 명시된 상황 하에서 재정적 긴급상황을 선포할 수 있으며, 해당 긴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회는 기타 심의 행위를 중지하고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을 심의해야 합니다.
- 예산 예비비를 설정합니다.
-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 채권법이 단일 항목 또는 작업임을 규정합니다.
- 향후의 적자 채권 발행을 금지합니다.

**입법 분석관의 주 및 지방 정부의 재정적 영향 평가 개요:**

- 주에 미치는 순수한 재정적 영향은 알려진 바 없으나, 부분적으로 향후 의회의 활동에 따라 매년 다양하게 나타날 것임.
- 예비비 규정으로 경제 호황기에 주 지출을 삭감하고 불황기에는 증대시킴으로써 주 지출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음.
- 균형 예산 및 채무 제한 규정에 따라 예산 부족분 문제를 바로잡는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ACAX5 5(법안 58)에 대한 입법부의 최종 표결**

하원: 찬성 80 반대 0

상원: 찬성 35 반대 5

## 입법 분석관의 분석

### 배경

#### 캘리포니아의 예산 현황

캘리포니아는 최근 예산상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던 1990년대 후반 이후 2001년에 주정부의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정책 입안자는 일부 부족분 문제를 타계하고자 프로그램에 따른 지출을 감축하고 수입을 증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대규모의 결손금을 이월하며 상당 금액의 용자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정부는 큰 폭의 또 다른 2004-05년도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 미결제 상태인-상환 집행 연기 및 특별 기금 대출과 같은-여러 형태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 예산 및 채무 관련 헌법 규정

캘리포니아 헌법에는 본 법안의 영향을 받는 여러 예산-및 채무-관련 규정이 존재합니다.

- **균형 예산 요건.** 헌법에 따라 주지사는 차기 회계연도분(7월 1일에 시작)에 대한 균형을 이룬-예산 수입으로 제안된 지출액을 충당하거나 초과하지 않는 주 예산 제안서를 매년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본 균형 예산 요건은 1월에 주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에만 적용되는 한편, 의회가 최종 통과시키거나 주지사가 서명하는 예산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반기 예산 조정.** 지난 삼년 간 의회는 임시 회기에 소집되어, 예산 부족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반기 제안서를 심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불균형 해결을 위한 중반기 조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예비비 요건.** 예비비 기금은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예산 부족분의 영향을 완충시키는데 사용됩니다. 헌법에 따라, 의회는 프루던트 주 예비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예비비의 규모나 기금이 예비비로 설정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채무 관련 규정.** 헌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정부의 일반 세금 기관에서 지원하는 채무에 대해 유권자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몇 년 동안, 법원은 특정 유형의 용자(부족분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용자 및 특정 수입원으로 상환되는 일부 채권)는 유권자의 승인절차 없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헌법에 의거하여, 유권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채권은 관련 채권법에 명시된 대로 “단일 항목 또는 작업”을 위한 채권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간 유권자는 교육 설비, 상수도 프로젝트, 교도소 건설과 같이 단일 항목을 위한 채권 승인을 요청 받았습니다.

### 법안

본 법안은 헌법을 수정하여 (1) 주정부 균형 예산 집행 및 유지, (2) 특정 예비비 요건의 정립, 및 (3) 향후 적자 관련 용자 제한에 관련된 항목을 변경합니다. 본 법안을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합니다.

#### 균형 예산안

본 법안은 주정부가 균형 예산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예산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중반기에 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균형 예산.** 본 법안은 주지사가 균형 예산을 제안해야 하는 기존 요건 이외에, 주정부의 균형 예산 집행을 요구합니다. 특히, 예산 수입은 매년 예산 지출액을 충당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중반기 조정.** 본 법안에 따라, 주가 상당한 수입 부족분 또는 지출 적자 문제에 직면했다고 주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주지사는 재정적 긴급상황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법령을 제안해야 하며 이를 위한 목적으로 임시회기로 의회를 소집합니다. 예산 문제 해결 법령이 의회에서 부결되어 45일 이내에 주지사에게 이송되지 않는 경우, 본 법령이 통과될 때까지 의회의 (1) 다른 법안의 의결 또는 (2) 합동 휴회 기간의 휴회가 금지됩니다.

## 입법 분석관의 분석(계속)

### 예비비 요건

법안은 주정부 일반기금에 특수 예비비-예산 안정화 계정(BSA)-를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연간 이전액.** 일반기금의 연간 예상 수입의 일부는 매 회계연도의 9월 30일 또는 전에 주 감사관에 의해 해당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구체적인 이전액은 2006-07년도의 1%(약 850백만 달러), 2007-08년도의 2%(약 1.8십억 달러), 2008-09년도 및 이후에는 3%(약 2.9십억 달러)입니다. 해당 금액은 계정 잔액이 8십억 달러 또는 일반기금 수입의 5% 중 더 큰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전됩니다. 매년 이전 요건은 잔액이 8십억 달러 또는 5% 목표액 미만이 되는 경우 효력을 받습니다.(일반기금 수입이 현 수준-약 75십억 달러-이라고 가정할 때 필요한 예비비는 향후 최소 십여년 동안 8십억 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전 보류.** 주지사가 전 회계연도의 6월 1일 이전에 내린 집행 명령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연간 이전을 보류 또는 삭감할 수 있습니다.

**기금 할당.** 매년, BSA의 연간 이전액 중 50%는 법안 57에 의해 승인되는 적자 회복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전용 하위계정에 할당됩니다. 해당 이전 금액은 누적 총액이 5십억 달러에 이를 때까지 이전된

니다. 본 하위 계정의 기금은 해당 채권의 채무 상환을 위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BSA의 잔여기금은 일반기금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계정의 지출.** BSA의 자금은 의회 다수 표결과 주지사의 승인으로 본 계정에서 일반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일반기금의 이러한 자금은 일반적으로 의회의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현행법과 동일) 여러 용도로-예산 부족분 충당 포함-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 56의 관련 규정.** 본 투표에 회부된 법안 56에도 주 예비 기금에 관련된 새로운 그러나 상이한 요건이 있습니다.

### 향후의 적자 용자 금지

법안 57에서 승인된 채권 발행 이후, 본 법안은 예산 적자의 보전을 위한 대부분의 향후 용자를 금지합니다. 본 제안 규정은 일반 의무 채권, 수익 채권, 그리고 기타 특정 형태의 장기 용자에 적용됩니다. 제한 규정은 (1) 일반기금의 현금 부족분 보전을 위한 단기 용자(현재 주정부에서 사용 중인 수익예상어음 또는 수익예상담보 포함) 또는 (2) 주정부 기금 간 용자와 같은 기타 특정 형태의 용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법 분석관의 분석(계속)

### 기타 규정

본 법안은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합니다:

- 법안 57에 의해 승인된 채권과 관련하여, 의회가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일 항목 또는 작업”에는—본 법안에 한하여—재무 이사의 결정에 따라 주 예산누적결손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한 일회성 자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 본 법안의 규정은 투표에 회부된 법안 57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을 받습니다.

### 재정적 영향

본 법안의 재정적 영향은 향후 예산 상황 및 주지사과 의회의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재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균형 예산 및 채무 규정.** 과거 예산 문제를 겪었던 기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가끔씩 주지사과 의회는 예산누적결손금의 익년 이월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상기 기간 동안에 지출 삭감 및/또는 수익 증대가 실제 보다 적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균형 예산을 요구하고 용자를 제한하는 본 법안의 규정은 이 옵션에 대한 향후 주정부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예산 부족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주정부가 보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예비비 요건.** 본 법안에 설정된 8십억 달러 예비비 목표는 과거 예산 계획에 포함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예비비는 경제 주기에 맞춰 주정부 지출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호황기에 (연간 수입의 일정금을 예비비로 이전함으로써) 지출을 줄이고 불황기에는 (경제 불황기에 필요한 지출 삭감 영향을 “완충”하는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지출을 늘립니다.
- **기타 가능한 영향.** 본 법안은 주정부 재정에 기타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을 통해 예산 균형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용자가 줄어드는 경우, 주정부는 신용 등급 상승과 낮은 상환액으로 재정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 법안 58에 대한 찬성론

캘리포니아에 대한 주정부의 지출은 통제 밖에 있습니다. 지난 삼년 간, 주정부의 지출액은 주 수입을 상당 금액 초과했습니다.

법안 58은 주지사과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균형예산 집행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주지사는 균형예산의 제안만 가능하며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맹점으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대규모의 예산 적자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은:

균형예산을 요구합니다;

매 회계연도에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만을 허용합니다;

일반기금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경제 불황기에서 캘리포니아를 보호하는 예비비를 설정합니다. 예산 안정화 계정 또한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 채권의 조기 상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수입이 지출 보다 적은 경우, 또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적 긴급상황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재정 위기 해결 법령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 다른 법령을 의결하거나 휴회하는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캘리포니아는 공전의 예산 적자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다 지출로 인한 심각한 예산 부족은 대금을 지불하고 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정부의 능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이런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 장치입니다. 법안 58은 의회가 현 보유액을 초과한 예산 지출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은 최초로 주지사과 의회가 균형 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본 법안은 캘리포

니아 경제 회복 채권법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예산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캘리포니아가 공전의 예산 적자를 경험하는 동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간과되었고,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또한 없었습니다. 법안 58이 통과되면, 주지사는 향후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회기의 의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45일 이내에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의회는 휴회할 수 없으며 다른 법안을 심의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주지사과 의회가 너무 늦기 전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회복 채권, 법안 57, 그리고 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 법안 58 모두 재정 관리에 대한 주정부의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캘리포니아 지도자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 Steve Westly 주 감사관, Jack O'Connell 공교육 교육감,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캘리포니아 납세자협회, 그리고 총 80인의 캘리포니아 하원-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의원들과 동참하여 법안 58을 지지하십시오.

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  
캘리포니아주

HERB J. WESSON, JR., 하원의장  
캘리포니아주 하원

JENNY OROPEZA, 의장  
하원예산위원회

### 법안 58 찬성론에 대한 반론

이 책략에 반대하십시오! Arnold가 다음과 같이 제시했던 처음 공약을 기억하십니까? 과거 실수를 보전하기 위해 15십억 달러 채권에 찬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엄격한 지출 제한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법안 57은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안 58은 전혀 지출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는 자유롭게 무분별한 지출을 계속할 수 있으며, 높은 세금과 더욱 많은 채무를 강요할 것입니다. 고통만 있고 얻는 것은 없습니다. 이 알맹이 없는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우리는 Gray Davis 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예산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 상으로 이미 캘리포니아 예산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균형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법안 58은 균형 예산을 위해 현재 사용되는 알팍한 술수-회계 조작과 단기 용자-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찬성론자들은 법안 58이 “매 회계연도에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그들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단기 용자로 인해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 하원의원이 만장일치로 본 법안에 찬성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당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던 전력 부문의 독과점 해체 법안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한 결점투성이의 법안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안 58은 채권 판매를 정당화할 뿐입니다. 부풀려진 예산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안 58에는 지출 제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용자와 더 많은 세금 징수에 속수무책인 법안입니다.

Sacramento가 각성하도록 촉구합니다. 법안 58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RICHARD RIDER, 의장  
San Diego 세금을위한투쟁자모임

BRUCE HENDERSON, 회장  
세금을걱정하는납세자협회

JOE ARMENDARIZ, 전무이사  
Santa Barbara 카운티 납세자협회

## 법안 58에 대한 반대론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대의 예산 적자를 초래했던 의회가, 이제 캘리포니아 한 가구당 2,000달러가 넘는 비용으로 15십억 달러를 융자하여 그 적자를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헌법은 이를 금지합니다. 1849년 이래로, 헌법의 “단일 항목 또는 작업” 규정은 차세대를 위한 학교, 공원 또는 상수도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에 대한 장기 융자를 제한해 왔습니다. 법안 58은 해당 규정을 일축하고, 캘리포니아 역사상 어떤 세대도 하지 않았던—미래의 기회를 강탈하는 행위를 의회에 허용합니다.

주 신용 등급이 미국에서 최하위를 기록—싱가폴과 말레이시아와 대등한 수준—하는 지금, 의회는 스스로의 실책으로 비롯된 빚을 치르기 위해 15십억 달러를 추가로 차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청구서를 떠넘깁니다. 우리 헌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 58은 해당 규정을 폐지하며, 우리를 15십억 달러의 채무에 몰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안 58의 실제 목적입니다.

의회는 감히 이 법안을 “균형 예산법”이라 칭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의회는 공정한 투표 명칭과 개요를 보장하는 법을 보류시키고 실제 그들 마음대로 이 법안을 작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명망있는 신문 칼럼니스트인 Daniel Weintraub은 “균형 예산 요건은 실제적으로 입법자들이 균형 예산을 승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칼럼을 기재했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의 헌법은 이미 예산 균형을 위한 조치로 장기 융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의회에서 보류한 규정입니다! 우리는 단기 융자로 인해 이러한 혼란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법안 58은 단기 융자에 대해 면제부를 주고 있습니다. Weintraub이 말한 대로, 법안 58은 “적자를 감추기 위한 융자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현행법 내에서 프루던트 예비비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의회와 주지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법안 58의 통과로 이들은 계속하여 이 요건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Weintraub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주지사는 언제든지 예비비의 자금 이전을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예비비에서... 언제든지 자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보호 조항이 아닙니다!

주지사는 예산 부족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본 발의안에 의거하면, 의회는 해당 문제에 대해 의결한 경우에만 다른 법안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점투성이입니다. Weintraub에 따르면: “의회가 부족분 해결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 주지사가 의회의 접근 수단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의회는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실제, 이러한 규정으로 현재 우리가 처한 진퇴양난의 사태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의회가 균형 예산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균형 예산을 위해 회계연도 중반기에 지출을 삭감하는 주지사의 권한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의회가 지출 제한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십여년간 균형 예산과 프루던트 예비비를 유지시켰던 Gann 지출 제한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단 한가지에만 진지한 태도를 보입니다—그들은 보다 많은 자금을 차용하고자 하며 본 수정안은 의회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RICHARD RIDER, 의장  
San Diego 세금을위한투쟁자모임

BRUCE HENDERSON, 회장  
세금을걱정하는납세자협회

JOE ARMENDARIZ, 전무이사  
Santa Barbara 카운티 납세자협회

## 법안 58 반대론에 대한 반론

반대론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 납세자협회는 캘리포니아 균형 예산법을 지지합니다.

법안 58은 최초로 균형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대한 주정부의 지출은 통제 밖에 있습니다. 지난 삼년 간, 주정부의 지출액은 주 수입을 상당 금액 초과했습니다.

법안 58에 따라,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균형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는데 이용된 허점을 제거할 것입니다.

Schwarzenegger 주지사의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 계획에는 법안 57과 58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개의 해당 법안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채무 해결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자금을 초과하여 지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법안 58에서 의회는 균형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예산 통과 후 상황이 바뀐 경우에는, 연말까지 예산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지사가 임시 회기로 의회를 소집하여 회

계 연도 중반기에 예산을 변경해야 합니다. 법안 58은 예산 균형이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의회가 임의의 새로운 법률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법안 58은 Gann 지출 제한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 제한은 여전히 법률로 존재하며, 균형 예산법은 과다 지출을 해결하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합니다.

법안 58은 향후 적자에 대비한 융자를 금지합니다. 법안 58은 8십억 달러 이상의 예비비 적립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회복 계획에 대한 지지와 함께, 법안 57과 58에 찬성 표를 던지십시오.

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  
캘리포니아주

BILL HAUCK, 의장  
캘리포니아 법개정위원회

ALLAN ZAREMBERG, 의장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주정부 채권 채무에 대한 본 개요는 주요 투표 안내 책자에 담긴 유사 분석 내용을 대신합니다. 본 개요에서는 두 개의 채권 법안-법안 55(교육시설) 및 법안 57(예산 적자)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후자 법안은 주요 투표 안내 책자에 수록되는 인쇄 마감 제출 기한이 지난 후 투표 대상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본 항에서는 현재 주정부가 안고 있는 채권채무의 개요를 살펴봅니다. 또한 본 투표에 회부된 채권 법안 승인에 따른 현재 채무수준 및 채무 상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배경**

**채권금융의 정의.** 채권금융은 주정부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장기 차용을 말합니다. 주정부는 투자자에게 채권을 판매하여 해당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 대가로, 정부는 지정한 일정에 따라 금리와 함께 자금을 상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채권을 이용하는 이유.** 주정부는 전통적으로 채권을 이용하여 도로, 교육시설, 교도소, 공원, 수도 프로젝트 및 사무실 건물과 같은 주요 자본 지출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 시설은 수년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 시설의 막대한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운 이유로 채권을 이용하여 재원을 조달합니다. 그러나, 최근 주정부는 일반기금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채권을 활용했습니다.

**주정부가 판매하는 채권 유형.** 주정부가 판매하는 세 가지 주요 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기금 지원형 채권.** 본 채권은 주정부의 일반기금에서 상환되며, 일반기금은 대개 세수로 충당됩니다. 이런 채권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대다수는 **일반의무채권**입니다. 일반의무채권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채권의 상환은 주 헌법으로 보장됩니다. 두번째 유형은 **임대수익채권**입니다. 임대수익채권은 유권자의 승인 없이도 발행할 수 있고 채권 상환이 보장 되지 않으며 채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주 기관이 지급하는 임대료(주로 일반기금에서)를 통해 상환됩니다. 그 결과, 임대수익 채권은 일반의무 채권보다 다소 높은 금리가 책정됩니다.
- **전통적 수익채권.** 본 수익채권 역시 자본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지만, 일반기금에서 충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본 채권은 일반적으로 교량 통과세와 같이 해당 채권이 자금을 조달하는 사

업에 의해 발생하는 정해진 수익 체계를 통해 상환됩니다. 본 채권 역시 유권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예산관련 채권.** 지난 2년간, 주지사와 의회는 주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타 다른 채권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채권들은 주의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도 시행된 10.7십억 상당의 적자재정 채권을 포함합니다. 본 채권은 법정에 계류 중으로서 아직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채권의 원리금 상환액은 주 일반채권에서 부담됩니다.

**채권금융의 직접비용.** 정부의 채권 이용 금액은 주로 채권 금리와 상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일반의무 채권은 30년의 기간에 걸쳐 상환됩니다. 일반의무 채권에 대해 현재 비과세금리(약 5.25%)를 적용할 경우, 30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 비용은 용자금 1달러 당 원금과 이자가 각각 1달러씩 약 2달러입니다. 그러나 30년에 걸쳐 채무를 이행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훨씬 적은 금액인 대여금 1달러 당 약 1.25달러가 실제상환비용으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주정부 채무현황**

**일반기금 채무액.** 2003년 11월 현재 주정부는 29십억 달러 상당의 일반기금 채권채무와 7십억 달러 상당의 임대수익 채권채무를 안고 있어 총 36십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관련 프로젝트가 아직 추진되지 않았거나 주요 건설단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21십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승인 받았으나 아직 판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총액에는 승인된 10.7십억의 적자재정 채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기금 채무 지급.** 2003-04년 사이에는 일반기금 상환액이 약 2.5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금액은 일반기금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특정 채권 원금 상환의 연기로 인해 상환이 연기되지 않은 경우보다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단발성 효과가 없는 경우, 채무 지불은 2004-05년에 약 3.5십억 달러로 증가할 것입니다. 과거에 승인되었으나 현재 미판매 상태인 채권이 거래되면서, 상



당한 채권 채무 비용이 증가하여 2007-08년에는 약 4.1십억 달러에 이르고, 신규 채권이 승인되지 않을 시에는 이후에 완만하게 감소할 것입니다.

**채무상환비율.** 주 수입의 백분율로 표시한 일반기금 채무 상환 수준을 주의 채무상환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의 이러한 채무상환비율은 1990년대 초기에 증가하여 중반에 이르러서는 상환비율이 5%를 상회함에 따라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비율은 약 3.3%이며, 현재 승인된 채권이 판매되면서 2004-05년에는 4.6%로 증가하고, 2005-06년에는 4.9%로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채권 법안이 본 투표에 미치는 영향

본 주민투표에는 두 개의 채권 법안이 회부됩니다:

- 법안 55는 정부가 12.3십억 달러 상당의 일반의 무채권을 발행하여 K-12 공립 학교시설 및 고등 교육시설의 건축 및 개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 법안 57은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의 15십억 달러 상당 채권 발행을 승인합니다. 본 채권은 현재 승인된 10.7십억 달러 손실금에 대한 적자재정 채권 대신 사용될 것입니다.

주정부의 채무 상황에 대한 본 법안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지급에 대한 영향.** 본 투표에 회부된 법안 55에 따라 교육 시설을 위한 12.3십억 달러의 채권이 승인되어 판매되는 경우, 채권 유효기간 동안에 매년 평균 800백만 달러 이상의 채무 상환 비용이 추가됩

니다. 현재 승인된 적자재정 채권이 판매되는 경우, 2004-05년에는 일반기금 비용이 2.4십억 달러 추가되고 이 금액은 채권이 상환될 때까지(대략 5년간) 해마다 조금씩 증가합니다. 법안 57에 따라 발행되는 15십억 달러 채권이 현재 승인된 적자재정 채권 대신 사용되는 경우, 연간 채무 상환액은 2004-05년에 1.2십억 달러에 이르고 이후 연도에는 그 금액이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법안 58에 의해 설정된 예산 예비비의 추가 지분이 포함되는 경우, 연간 지불액이 해마다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채무 상환액은 감소하고 채무 규모는 확대됨에 따라, 제안된 본 채권에 대한 채무 상환 비용은 장기간-구년에서 14년 사이로-계속될 것입니다.

**채무상환비율에 미치는 영향.** 12.3십억 달러 상당의 교육 채권이 투표에 의해 승인을 받아 판매되면 비율은 2006-07년에 약 5.3%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에는 하락할 것입니다. 현재 승인된 적자재정 채권에 대한 채무 상환액을 현 계산에 포함하는 경우, 총 채무상환비율은 채권이 상환될 때(2009-10년으로 추정)까지 연간 약 8%에서 8.5% 사이로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 57에서 제안하는 채권이 현재 승인된 채권 대신 승인되어 판매되는 경우, 가까운 기간 내에 2004-05년과 2008-09년 사이, 매년 6.4%에서 6.9% 사이로 소폭 낮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안된 채권의 상환 기간이 연장되므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더 높은 비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법안 58에 의해 조성된 예산 예비비의 추가 지분이 포함되는 경우, 이자율이 해마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안 57

2003-2004년 제오차 임시회기의 하원법안 9(2003-2004년도 제오차 임시회기 제2절)를 통해 제안된 본 법률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 XVI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됩니다.

제안된 본 법률안은 정부조직법에 항을 추가합니다; 따라서 추가될 새로운 제안 규정들은 신설 규정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됩니다.

법률안

제3항, 제18부(제99050항 이하)는 정부조직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됩니다:

제18부. 경제 회복 채권법

제1절. 일반 규정

99050. (a) 본 부를 경제 회복 채권법이라 칭합니다.

(b) 재원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주 예산누적결손금으로 인해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공교육과 주요 의료 및 안전 프로그램을 보존하고자, 의회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대체 재원의 설정이 공공 복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과, 본 부에 의거 발행 및 판매가 제안되는 채권의 수익 활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경제적인 수단임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99051. 본 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 (1) "주 예산누적결손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조 제1.3항에서 나타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2) 제(1)목에서 언급한 금액은 채무 이사가 증명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b) "부수적 채무"란, 다음을 포함하여 본 부에 따라 발행된 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정부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1) 채권보증보험, 신용장, 보증 채권 매입 합의, 상환 합의, 일시적 차입, 또는 기타 유사한 합의 형태의 신용 보장 또는 유통화 합의를 포함하는 신용 보장 또는 유통화 합의.

(2) 리마케팅 합의.

(3) 경매 중개인 합의.

(4) 중개업자-판매업자 간 합의 또는 채권 마케팅과 관련된 기타 합의.

(5) 이자율 또는 기타 유형의 스왑 또는 헷징 계약.

(6) 투자 협정, 선구매 계약, 또는 유사한 구조의 투자 계약.

(c) "위원회"란 제99055항에 의거 조성되는 경제 회복 금융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d) "기금"은 제99060항에 의거 조성되는 경제 회복 기금을 의미합니다.

(e) "결의서"란 임의의 결의서, 신탁 계약서, 약정서, 증서, 또는 본 부에 의거하여 채권 발행을 승인하고 채권 담보 및 상환을 규정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f) "피신탁인"은 본 부에 따른 채권 발행을 위해 피신탁인이 되는 주정부 내부 또는 외부의 출납국장, 은행, 또는 신탁회사를 의미합니다. 채권 발행이 일회를 초과한 경우, 본 용어는 각각의 채권 발행에 대한 피신탁인을 의미합니다. 채권 발행에 공동 피신탁인이 있는 경우, "피신탁인"은 공동 피신탁인을 총괄하여 의미합니다.

제2절. 경제 회복 금융 위원회

99055. (a) 주 일반의무채권법에 의거하여 본 부에 따라 승인된 채권의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하고, 이에 따른 결정 및 본 부에 따라 승인되는 기타 행위의 실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경제 회복 금융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본 부의 목적 상, 경제 회복 금융 위원회는 주 일반의무채권법(제2부 제4편 제3장 제4절(제16720항 이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라 칭합니다.

(b) 위원회는 다음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1) 주지사 또는 주지사의 피지명자.

(2) 재무이사.

(3) 출납국장.

(4) 감사관.

(5) 상무, 교통 및 주택부 장관.

(6) 총무청장.

(7) 교통청장.

(c) 기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각 구성원은 모든 목적을 위해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d) 의회는 위원회의 각 구성원이 유사 금융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e)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위원회의 정족수를 구성하며 위원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f) 재무이사는 본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제3절. 경제 회복 기금

99060. (a) 본 부에 따라 발행되고 판매된 채권의 수익은 경제 회복 기금에 적립되며, 이에 따른 경제 회복 기금은 주 재무성에서 설정됩니다.

(b) 기금의 자금은 잉여금 투자 기금에 투자해야 하며 해당 투자로 인한 모든 수익은 기금에 적립됩니다.

(c) 발행 비용, 관리 비용 및 채권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고, 본 부에 의거 발행 및 판매된 채권, 또는 제17부(제99000항 이하)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을 회수하거나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 기금의 잔액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반기금으로 이전하여 본 부에서 설명한 목적으로 위해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99062. 본 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채권 판매에서 실현된 최초 자금 중, 제16724.5항에서 명시한 목적 상 사용된 모든 지출액은 동항에 의거 설정된 일반의무채권 지출회전기금에 재적립되어야 하며, 본 자금은 채권이 추가로 판매될 때마다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99064. 본 절에 의거 발행 및 판매되는 채권의 수익금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제적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a) 주 예산누적결손금에 대한 자금 제공, 이는 제17부(제99000항 이하)에 의거 발행되는 채권의 일부 차환 또는 상환으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음.

(b) 예비비 제공, 투자 이익, 부수적 채무의 설정 또는 계약 비용, 제17부(제99000항 이하)에 의거 발행되는 재정 회복 채권의 차환 또는 상환과 관련된 비용, 본 부의 목적 실현과 관련된 행정비용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부에 의거한 채권 발행과 관련된 비용 지불.

제4절. 채권 규정

99065. (a) 제(b)호에 의거하여, 제99075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환 채권 금액 또는 동항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총 일백오십억 달러(\$15,000,000,000)의 채권이 본 부에 명시된 목적의 수행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제16724.5항에 의거하여 일반 의무채권 비용 회전기금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 및 판매될 수 있습니다. 판매시, 채권은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채무를 구성하며, 원리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지급해야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담보로 기한 내의 채권 원리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또한, 채권은 판매되는 경우 제99008항에 의거하여 조성되는 재정 회복 기금의 수익 및 기타 금액을 담보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채권은 재정 회복 기금의 금액에 대한 여러 담보권 우선순위에 따라 보장될 수 있습니다.

(b) (a)호에 의거 발행 및 판매되는 채권 금액은 제17부(제99000항 이하)에 의거 발행되는 채권 금액, 그리고 캘리포니아 연금의무 재정

법안 57 (계속)

법(제2부 제4편 제3장 제7절(제16910항 이하))에 의거 발행되는 채권 금액만큼 감소됩니다. 단, 해당 채권들이 본 부에 의해 승인된 채권 수익으로 인해 회수, 무효화, 또는 상환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c) 본 항에 의거하여, 출납국장은 위원회가 승인한 채권을 판매해야 합니다. 채권은 제16731항 및 제99070항에 의거 위원회가 채택해야 하는 결의서에 명시된 조항 및 조건에 따라 판매되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채권의 효과적인 판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출납국장이 채권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 채권을 판매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16754.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할인율은 프리미엄의 순금액에 대하여 액면 가격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9066. 본 부에 의해 승인된 채권은 주 일반의무채권법(제2부 제4편 제3장 제4절(제16720항 이하))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 실행, 발행, 판매, 지급, 및 상환되고, 제16727항 제(a)호 및 제(b)호 또는 본 부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법의 기타 조항을 제외한 동 법의 모든 규정은 본 채권 및 본 부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본 부에 완전히 규정된 것으로서 본 부에 통합됩니다.

99067. 본 부의 목적 상, 재정부는 주 일반의무채권법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이사회" 라는 용어로 지정합니다.

99069. 본 부 또는 주 일반의무채권법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출납국장이 특정 조건 하에서 연방세 관련 목적으로 총수입에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제외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채권 권고안을 포함하는 본 부에 의거해 채권을 판매하는 경우, 출납국장은 투자한 채권 수익 및 수익에 따른 투자수입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고, 환불금, 벌금, 기타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지급을 이행하는데 해당 수익 및 수입을 직접 사용 또는 사용을 지시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채권의 세금 면제 상태를 유지하고 주 기금을 대신해 연방법상 기타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연방법상 요구되거나 또는 바람직한 경우 해당 채권수익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해 다른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있습니다.

99070. (a) (1) 위원회는 본 부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본 부에 의거 승인된 채권 발행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 발행의 필요 여부 및 바람직한지 여부와 함께, 발행 및 판매할 채권 금액, 본 부에서 승인하는 채권의 수익금이 사용되어야 하는 시기, 그리고 본 부에서 승인하는 채권의 해당되는 기타 조항 및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2) 본 부 및 주 일반의무채권법에서 명확히 부여하는 권한 이외에, 위원회는 채권과 관련된 약정서 및 부수적 채무의 승인, 그리고 의장과 채권 판매 대리인으로서 출납국장에게 필요한 의무를 위임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해당 권한과 본 부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편의를 위한 모든 사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는 예산누적결손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의 순수익이, 본 부 또는 제17부(제99000항 이하)에 의거 발행된 채권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본 부에 의거 발행되는 채권을 제외하고 적자 예산 지원을 위해 제17부(제99000항 이하)에 의거 발행되는 채권 순수익과 합산할 때, 총 일백오십억 달러(\$15,000,000,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발행 채권의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본 항의 어떤 내용도, 제17부(제99000항 이하)에 의거 발행되는 채권의 차환 또는 상환을 포함하여, 제99065항에서 설명하는 총 채권 제한 금액에 따라 본 부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채권 금액의 발행을 승인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b) 그러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후속적으로 채권 발행이 승인되고 판매될 수 있으나, 발행이 승인된 채권 모두가 일시에 판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부 및 주 일반의무채권법에서 명확히 부여하는 권한 이외에, 위원회는 채권과 관련된 약정서 및 부수적 채무의 승인, 그리고 의장과 채권 판매 대리인으로서 출납국장에게 필요한 의무를 위임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해당 권한과 본 부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편의를 위한 모든 사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99071. 채권의 원리금 및 부수적 채무의 지불은 제99008항에 의거 설정된 재정 회복 기금에서의 모든 주정부 판매세와 이용세 수익 그리

고 임의의 수입을 담보로 지불하거나 보증해야 합니다. 채무이사가 보증하고 위원회가 승인하는 예상액에 준하여, 재정 회복 기금의 자금이 해당 금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정부의 일반 수익에 추가하여 본 부에서 승인되고 주정부의 모든 신뢰와 신용이 보증하는 채권 및 부수적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총액을 기타 주 수익이 징수되는 방식 및 시기와 동일하게 징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세입의 징수와 관련된 직무와 더불어 법률에 의해 부여된 모든 공무원의 직무입니다.

99072. (a) 제13340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와 같이 제99008항에 의거 설정된 재정 회복 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충당됩니다:

(1) 채권의 원리금 상환의 만기가 도래하여 지급해야 하는 경우, 결의서의 예비비와 보상 범위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 제99070항에 기술된 대로 발행 및 판매되는 채권의 원리금을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금액.

(2) 채권과 관련하여 시작되는 부수적 채무 상환에 필요한 금액.

(3) 채권 및 부수적 채무 이자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신탁인 또는 기타 관리 비용.

(4) 위원회 승인에 따라, 명시된 만기일에 앞선 채권의 상환, 회수, 폐기, 또는 구매.

(b) 제13340항에도 불구하고, 제99071항에 의거 승인된 대로, 제(a)호에 의해 책정된 자금이 제(a)호의 제(1)목에서 제(4)목까지의 내용에서 지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의 목적 상, 재정 회복 기금에서 책정되는 수입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제(a)호의 제(1)목에서 제(4)목까지의 내용에서 지정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는 금액을 일반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c) 세입 및 과세법 제6051.5항 및 6201.5항에 의거 징수되고 재정 회복 기금으로 적립되는 판매세 및 이용세는 본 부에 의거 발행되는 채권의 원리금 지불, 부수적 채무 지불, 및 채권 및 부수적 채무 이자를 지불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변경 불가능한 담보가 됩니다. 의회는 재정 회복 기금에 대한 추가 수익 적립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본 호의 보증은 사무소 또는 특정 장소에 통지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부수적 채무와 관련된 결의서 또는 거래의 실행 또는 이행 즉시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99074. 판매 채권의 발생 이자에서 과세된 경제 복구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동 기금에 적립되며, 채권이 자 지출을 위한 예치금으로서 경제 복구 기금으로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99075. 채권은 주 일반의무채권법의 일부인 제2부 제4편 제3장 제4절 제6조(제16780항 이하)에 따라 상환될 수 있습니다. 본 부에 기술된 채권 발행에 대한 주 유권자의 승인은 본 부에 의거 본래 발행된 모든 채권 및 이전에 발행된 모든 차환발행 채권의 상환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모든 채권 발행에 대한 승인을 포함합니다.

99076. 의회는 본 부에 의하여 승인된 채권의 판매로부터의 수익금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B조에서 사용된 용어와 같은 "세금수입"이 아니므로, 이러한 수익금의 지출은 동 조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99077. 이에 따라 주정부는, 본 부가 재정 회복 기금에 적립되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세입 및 과세법 제6051.5항 및 제6201.5항에 의거 부과되는 세금의 부과율을 낮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장하고, 본 부에 의거 발행되는 채권의 보유자와 이에 동의합니다.

제8항. 본 법의 제1항부터 제4.20항까지의 내용은 다음 두 경우에 동시 해당되는 경우에만 효력을 갖습니다:

(a) 2003-04 제5차 임시 회의의 ACA 5가 2004년 3월 2일 주광역 예비선거에 회부되어 유권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

(b) 본 법의 제3항에서 기술된 대로 유권자가 경제 회복 채권법을 채택하는 경우.



법안 58

2003-2004 제오차 임시회기의 하원 헌법 수정 5(2003-2004년 도 제오차 임시회기의 결의안 제1절)를 통해 제안된 본 수정안은 해당 조항을 추가 및 수정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헌법을 명확하게 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삭제될 현행 규정들은 취소됨으로 인해 폐기되고 추가될 신설 규정들은 신설 규정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됩니다.

제IV조 및 제XVI조의 수정안

첫째-제IV조 제10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제10항. (a) 의회에서 통과된 각 법안은 주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지사가 본 법안에 서명하는 경우, 법안은 법령으로 발효됩니다. 주지사가 법안을 발의한 상원 또는 하원에 이의서와 함께 법안을 환부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의서는 의사록에 기록되고 의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해야 합니다. 의사록에 기록되는 순차표결에 의해 상하원의 의원 2분의 2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회 양원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법안은 법령으로 발효됩니다.

(b) (1) 입법상의 구역, 하원의원 선거구를 비롯한 기타 선거구의 경계를 결정 또는 변경하는 법안을 제외하고, 두 해의 입법 회기 중 두번째 연도에 재소집하기 위해 합동 휴회로 의회가 휴회한 당일 또는 전에 의회에서 통과되어, 휴회일 이후 주지사가 보유하고 30일 이내에 환부하지 않은 모든 법안은 법령으로 발효됩니다.

(2) 두 해의 입법 회기 중 두번째 연도의 9월 1일 이전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주지사가 9월 1일 당일 또는 후에 제출 받아 당해 연도의 9월 30일까지 환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안은 법령으로 발효됩니다.

(3) 주지사에게 제출된 후 12일 내에 환부되지 않은 모든 법안은 법령으로 발효됩니다.

(4) 의회가 임시 회기를 휴회함으로써 거부 의사 및 법안의 환부를 방해하는 경우, 주지사가 법안과 거부 의사를 주총무처에 기탁하여 법안 제출 후 12일 이내에 해당 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법안은 법령으로 발효됩니다.

(5) 주지사의 법안 관련 업무 수행 기간 중 12번째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본 호의 제(3)목 또는 제(4)목에 의거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아닌 익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c) 두 해의 입법 회기 중 첫번째 연도에 제출된 법안 중, 두 해 중 두번째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원이나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한 모든 법안은 더 이상 해당 상원 또는 하원에서 통과될 수 없습니다. 선거 소집 법령, 세금 징수 또는 주정부의 현재 일반 지출금 책정 법령, 긴급 법령, 그리고 주지사가 거부한 뒤 통과되는 법안을 제외하고는 짝수 연도의 9월 1일 또는 이후에는 법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d) 의회는 두 해의 입법 회기 중 두번째 연도의 11월 15일 이후에는 주지사에게 법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e) 주지사는 법안의 일부를 승인하면서 하나 이상의 지출금 항목을 줄이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감소 또는 삭제된 항목의 명세서와 그 근거를 법안에 첨부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법안을 발의한 상원 또는 하원에 명세서 및 근거 서류의 사본을 이송해야 합니다. 감소하거나 삭제된 항목은 개별적으로 재의되어야 하며, 법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지사의 거부권에 우선하여 통과될 수 있습니다.

(f) (1) 주지사의 2004-05 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 집행 이후,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기금 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일반기금 예상 수익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또는 일반기금 지출이 일반기금 예상 수익을 상당 금액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이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지사는 재정적 긴급상황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으며, 의회가 이를 목적으로 임시 회기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성명서는 재정적 긴급상황의 성격을 입증해야 하며, 주지사는 재정적 긴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안과 함께 해당 성명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의회가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고, 성명서 발표 이후 45일까지 재정적 긴급상황을 해결할 법안을 주지사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주지사에게 전달될 때까지, 의회는 다른 법안을 의결할 수 없으며 합동 휴회 기간에도 휴회할 수 없습니다.

(3) 본 항에 의거하여 선포된 재정적 긴급상황을 해결하는 법안은 동일한 취지의 성명서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제IV조 제1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제12항. (a) 각 역년의 최초 10일 내에, 주지사는 권고된 주 지출과 추산된 주 수입에 대한 항목별 명세서를 포함하여 자기 회계연도 예산을 상세히 설명한 내용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권고된 지출이 추산된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주지사는 추가 재원을 제시해야 합니다.

(b) 주지사 및 주지사 당선자는 주 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예산 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1) 예산은 권고된 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2) 예산안은 **책정금액**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의장이 각 양원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예산**

(3) 해당 의회는 매년 6월 15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과각**

(4) 예산안이 법령화될 때까지, 의회는 주지사가 권고한 긴급법안 또는 의회의 봉급 및 지출 비용 책정금액을 제외하고, 일체의 지출용 기금을 책정하는 법안을 예산안이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는 회계연도 기간 동안에는 심의를 위해 주지사에게 제출할 수 없습니다.

(d) 예산안을 제외한 어떠한 법안도 두 개 이상의 책정 항목을 포함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립학교를 위한 책정금을 제외한 주 일반기금의 지출 책정은, 의사록에 기록되는 순차 표결에 의해 상하원의 의원 2분의 2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e) 의회는 예산 상정, 승인 및 집행과 모든 주 기관의 예산 신청을 관리합니다.

(f) 2004-05 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의 회계연도 중에, 예산안 통과일에 시행된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기금으로부터의 전체 책정금액과, 제 XVI조 제20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이전된 일반기금 액수를 합한 총액이 예산안 통과일에 추산한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기금 수익을 초과하여 일반기금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예산안을, 의회는 심의를 위해 주지사에게 제출할 수 없으며 주지사 또한 서명하여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일반기금 예상 수익은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제XVI조에 추가되는 제1.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항. (a) 제1항의 목적에 따라, 제1항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의회가 삼십만 달러(\$300,000)를 초과하는 채무 또는 부채 구성 대상이 되는 "단일 항목 또는 작업"에는 2004년 3월 2일, 주광역 예비선거 시 유권자에게 제출되는 법안에서 승인되는 자금 제공의 범위 및 액수에 따른 주 예산누적결손금에 대한 제공 자금이 포함됩니다.

(b) 제(a)호에서 사용된, "주 예산누적결손금"은 재무 이사가 증명 한 대로 다음 금액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1) 캘리포니아 재정 회복법(정부 조직법의 제17부(제99000항 이하))에 따라 발행되거나 발행 예정인 채권의 순이익 예상액 및 제(a)호에 기술된 대로 2004년 3월 2일 주광역 예비선거 시 유권자에게 제출되는 법안에 따라 발행되거나 발행 예정인 채권의 순이익 예상액의 영향은 포함되지 않은, 2004년 6월 30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특별기금의 예상 수치적자 금액.

(2) 해당 수치적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범위 한도내에서, 2004년 6월 30일 전에 주정부에 의해 발생한 기타 일반기금 채무금액.

(c) 다음 내용에 따라, 법령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a)호에서 기술한 주 채권 발행에 이어서 주정부는 연말 주 예산결손금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1) 본 조의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부채, (2) 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으로서 지정 수입원에서만 지원되는 자금 하의 채무 의무, (3) 법적 상환 의무가 없는 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대출 문서. 본 호는 최종 수익금이 사용될 기준의 책정금을 초과하지 않고 다음 목적을 위해, 단기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 수입 또는 기타 수익금을 수령할 것을 미리 예상하여 발생시킨 단기 채무를 통해 확보된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호의 목적에 따라, "연말 주 예산결손금"에는 제(b)호에서 정의한 주 예산누적결손금에 속한 채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넷째-제XVI조에 추가된 제20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항. (a) 예산 안정화 계정은 일반기금 내에 조성됩니다.

(b) 제(1)목부터 제(3)목에서 지정한 대로 각 회계연도에는, 감사관이 다음 금액을 일반기금에서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1) 2006년 9월 30일 이전, 2006-07 회계연도 일반기금 수익 예상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법안 58 (계속)

(2) 2007년 9월 30일 이전, 2007-08 회계연도 일반기금 수익 예상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2008년 9월 30일 이전 그리고 그 이후 매년마다, 현 회계연도 일반기금 수익 예상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c) 예산 안정화 계정의 잔액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명시된 일반기금 수익 예상액의 5%와 팔십억 달러(\$8,000,000,00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는 제(b)호에 의해 자금 이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의회는 법령에 따라, 한 해 이상의 회계연도 동안, 감사관에게 본 호가 규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d) 본 항에 의한 제한사항에 따라,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이전된 자금은 본 헌법의 모든 목적 상 일반기금 수익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 이전 회계연도의 6월 1일 전에 주지사가 발행하는 집행 명령에서 지정하는 회계연도에 일반기금에서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의 자금 이전을 보류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f) (1) 채권 회수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기타 상환 방법과는 별도로, 각 회계연도의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이전된 자금에서, 전체 회계연도

의 자금을 합한 금액이 50%, 즉 최대 총 오십억 달러(\$5,000,000,000)까지, 제1.3항에 따라 승인되고 발행된 적자 회복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적자 회복 채권 회수 감채기금 하위계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감채기금 하위계정의 자금은 계속해서 출납국장의 승인을 받으며, 출납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과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합니다. 모든 적자 회복 채권이 상환된 후, 감채기금 하위계정에 남아 있는 자금은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제(2)목에 의거하여 일반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2) 회계연도에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이전된 기타 다른 모든 자금은 감채기금 하위계정에 적용해서는 안되며, 법령에 따라, 일반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헌법 제XVI조의 제1.3항에 제시된 채권 법안이, 본 법안에 의해 추가되어, 2004년 3월 2일 주광역 예비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출되고 승인되는 경우에만 본 법안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섯째-본 법안은 2004년 3월 2일, 주광역 예비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retary of State  
1500 11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FIRST CLASS MAIL  
U.S. POSTAGE  
PAID  
SECRETARY OF  
STATE



## 예비 선거

English: 1-800-345-VOTE (8683)  
Español/Spanish: 1-800-232-VOTA (8682)  
日本語/Japanese: 1-800-339-2865  
Việt ngữ/Vietnamese: 1-800-339-8163  
Tagalog/Tagalog: 1-800-339-2957  
中文/Chinese: 1-800-339-2857  
한국어/Korean: 1-866-575-1558

[www.voterguide.ss.ca.gov](http://www.voterguide.ss.ca.gov)

## 유권자 공식 안내서

## 추가본

선거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주의회는 성(姓)이 동일한 2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주소로 주와 카운티의 안내 책자 1부 송부에 승인했습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1-800-345-VOTE로 전화하여 안내 책자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K